

제278회 강서구의회 임시회
행정·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

서울특별시 강서구 통·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

2021. 3. 4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·재무위원회

서울특별시 강서구 통·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1년 3월 4일
전문위원 최 광 호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2021 - 16
- 나. 발 의 자 : 김현희 의원 외 8명
- 다. 발의일자 : 2021년 2월 18일
- 라. 회부일자 : 2021년 2월 25일

2. 개정이유

2021년도 무상교육 대상이 고등학교 전학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통장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지급해오던 장학금 지원 대상을 대학생으로 변경하여 통장의 사기진작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장학금 지급대상을 대학생 자녀로 변경(안 제15조)
- 나. 장학금 지급 기준 명확화(안 제16조, 안 제18조)
- 다. 장학금액 및 지급시기를 대상에 맞게 수정(안 제20조, 안 제21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4조의2 및 제22조

나. 협조부서 : 자치행정과

다. 입법예고(2021. 2. 19. ~ 2. 24.) 결과: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 취지

- 「초·중등교육법」 개정으로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이 2021년도 전면 시행됨에 따라 통장 자녀 장학금지급 대상을 「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변경하고 수혜 대상 통장의 자격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.

나. 주요 내용

-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대상 변경(안 제15조)
 - “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통장의 자녀 중 고등학교 재학생” 에서 “통장의 대학생” 으로 변경
- 통장자녀장학금 수혜대상 변경(안 제16조)
 - “장학생” 에서 “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서” 로 변경
- 구체적인 장학생 우선 선발기준 마련(안 제18조2항)
 - 전년도 예산 범위에 따라 지급 제외된 통장의 자녀 우선 선발

○ 장학금 지급 근거 마련(안 제20조)

- 다른 장학금 지급 시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학비에서 이미 지급 받은 장학금을 공제하여 나머지 금액 이내로 지급

○ 장학금 지급시기를 현안에 맞게 수정 (안 제21조)

다. 종합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과의 최일선 접점에서 지방행정을 보조하는 통장에 대한 사기 진작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, 「초·중등교육법」¹⁾ 개정으로 2021년도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 확대 시행에 따라 달라진 교육환경을 반영하여 수혜 대상자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

- 안 제15조에서 장학금 지급 대상을 “고등학생에서 대학생” 으로
- 안 제16조에서 “장학생은 통장 1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” 로 수혜 대상자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들을 위해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통장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부여토록 하였으며,

1) 제10조의2(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)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(無償)으로 한다.

1. 입학금
2. 수업료
3. 학교운영지원비
4. 교과용 도서 구입비

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, 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9. 12. 3.]

[시행일]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순차적으로 시행

1. 2020학년도: 고등학교 등 2학년 및 3학년의 무상교육
2. 2021학년도 이후: 고등학교 등 전학년의 무상교육

- 안 제20조에서 “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학비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장학금을 지급” 받도록 하여 중복지급에 따른 차액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음

○ 이번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「통·리장 자녀장학금 제도의 개선 권고사항」 과 행정안전부 「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 에서 “통·리장 중·고교 자녀에 대한 장학금” 을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구체화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 내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사료됨.

□ 지방자치법

제4조의2(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 등의 명칭과 구역)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, 그 결과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,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(이하 “행정면”이라 한다)을 따로 둘 수 있다.

④ 동·리에서는 행정 능력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·리를 2개 이상의 동·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·리를 하나의 동·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·리(이하 “행정동·리”라 한다)를 따로 둘 수 있다.

⑤ 행정동·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09. 4. 1.]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

현 행		개 정	
301 일반 보전금	<p>02. 장학금 및 학자금</p> <p>1.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(국고대여장학금은 제외)</p> <p>가. 통·리장 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에 의한 통·리장 자녀장학금</p> <p>1) 적용대상 : 통·리장의 자녀 중 중,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</p> <p>2) 지급액 : 교육부 및 시·도교육청의 고시에 의한 기준 공납금</p> <p>나.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에 의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</p> <p>1) 적용대상 : 조례규정에 의거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중,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</p> <p>2) 지급액 : 교육부 및 시·도교육청의 고시에 의한 기준 공납금</p> <p>다.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</p>	301 일반 보전금	<p>02. 장학금 및 학자금</p> <p>1.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(국고대여장학금은 제외)</p> <p>- 통·리장 자녀, 새마을지도자 자녀 등 <u>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등에 대해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</u> (<u>교육부 및 시·도교육청의 고시에 따른 기준 공납금 참고</u>)</p>